#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차량기술규정

[ 시행 2020.12.17. 이사회 ]

# 제1장 목적 및 일반사항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대회운영규정(이하"대회운영규정"이라 한다) 제10조 제4항에 따라 Baja 차량기술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일반사항)

Baja 차량기술규정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대회운영규정에 따른다.

# 제2장 Baja 경기 차량의 조건

제3조 (경기 차량의 범위)

- ① 본 규정에 따라 외부의 도움 없이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1인승 차량으로,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 4바퀴 이상을 가져야 한다.
- ② 경기 차량은 팀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드라이버를 태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③ 경기차량은 일반차량(비개조차량)과 개조차량으로 구분된다. 개조차량은 일반차량의 엔진에 과급기 (Turbocharger, Supercharger), 연료장치, 점화장치, 흡기장치, 압축비를 변경한 차량이다.

# 제4조 (경기 차량의 크기 및 중량)

- ① 차량의 길이 제한은 없으나 최대 폭은 1,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앞/뒤 범퍼는 장작하지 않는다.
- ② 최저 지상고는 드라이버 탑승상태에서 150mm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일반차량의 차량 공차 중량은 200kg을 초과해야 한다.
- ④ 개조차량의 차량 공차 중량은 220kg을 초과해야 한다.

# 제3장 차체 기본 규정

제5조 (휠 및 타이어)

- ① 구매가능한 모든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어떠한 경우에도 타이어의 임의 변형과 어떠한 장치도 부착을 금지 한다.
- ③ 금속으로 제작된 휠만 사용이 가능하며 섬유강화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종류의 휠은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심하게 마모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 없는 타이어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⑤ 노면이 심하게 젖어 주최측에서 "wet"상황을 선언할 경우 일반 포장도로주행용 타이어는 사용할 수 없다.

# 제6조 (현가 및 조향장치)

- ① 모든 형태의 현가 및 조향장치가 허용된다.
- ② 조향장치는 조향 시 모든 부품이 안전하게 체결된 상태이어야 하며 풀림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변속레버의 위치는 운전석 내부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프레임 밖으로 돌출 되어서는 안 된다.

- ④ 최대로 조향하였을 때 휠, 타이어, 브레이크 등 부품 간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.
- ⑤ 각 팀의 차량은 과다한 각도의 조향을 방지하는 조향제한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⑥ 조향 휠은 원형에 가까운 폐곡선으로 이루어진 제품만 허용한다.
- ⑦ 현가장치는 아래쪽으로 50mm이상 작동될 수 있어야 하며 최대로 작동하였을 때 지면에 어떠한 부품이나 구조물도 닿지 않아야 한다.

# 제7조 (제동장치)

- ① 제동장치는 3개의 축, 혹은 4개의 휠을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② 경기차량의 제동능력은 40 km/h의 속도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15 m 이내에 정지하여야 하며, 제동 후 정지차량의 자세가 주행방향 기준으로 45도 이하여야 한다.
- ④ 플라스틱 재질의 제동튜브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⑤ 경기 중 뒤 차량의 안전을 위해 적색의 제동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동등의 면적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하며, 100mm당 1개 이상의 LED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⑥ 제동등은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작동상태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.
- ⑦ 제동등의 높이는 뒷 차축보다 높아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700mm이하여야 한다.
- ⑧ 제동시험은 가속경기와 병행하여 실시될 수 있다.
- ⑨ 제동등은 방수/방진 성능이 충분해야 하며 주행중 작동이 불가할 경우 경기에서 즉시 제외된다.

# 제4장 드라이버 보호구조

#### 제8조 (롤 케이지 설치)

- ① 차량의 전복에 대비한 4점 지지(구조물 형태) 방식 이상의 롤 케이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등록된 드라이버 중 팀에서 가장 큰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RHO(Roll Hoop Overhead Member)의 하단부와 드라이버의 헬멧사이의 간격이 150mm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롤 케이지는 드라이버의 가슴, 무릎, 어깨, 팔꿈치, 손, 팔 등과 최소 80m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구조물 형태이어야 한다.

# 제9조 (롤 케이지 요구사항)

- ① 롤 케이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16조에서 규정한 파이프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멤버는 다음과 같으며 지켜지지 않을 시 실격 처리된다.(그림1 참조)
  - 1. 메인롤후프 Rear Roll Hoop Member (RRH)
  - 2. 메인롤후프머리보강제 Roll Hoop Overhead Member (RHO)
  - 3. 전방롤후프보강제Front Bracing Member (FBM)
  - 4. 수평보강제 Lateral Cross Member (L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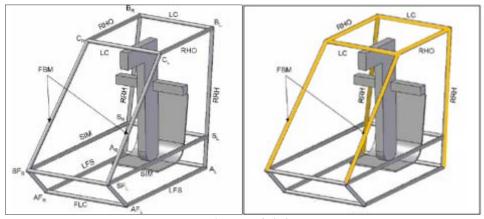


그림1. 롤 케이지

- ② 다음 멤버의 외경은 최소 25mm 이상, 두께는 0.9mm 이상의 탄소강이어야 한다.
  - 1. 하단측면보호구조물, Lower Frame Side Member (LFS)
  - 2. 측면충돌보호구조물, Side Impact Member (SIM)
  - 3. 전방수평부재, Front Lateral Cross Member (FLC)
  - 4. 안전벨트를 고정,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이프

# 제10조 메인롤후프 (Rear Roll Hoop (RRH) Members)

- ① RRH는 최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.
- ② 그림1에서처럼 2개의 상, 하 LC와 좌, 우 2개의 수직 멤버로 구성된다.
- ③ RRH는 A<sub>R</sub>, B<sub>R</sub>, B<sub>L</sub>, A<sub>L</sub> 등 4개의 지점에서만 용접이 가능하다.(즉, 중간에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.)
- ④ 드라이버의 시트는 RRH가 만드는 면을 뒤쪽으로 넘어설 수 없다.
- ⑤ RRH는 수직에서  $\pm$  20도 범위 이내로 설치되어져야 한다. $(A_R$ 에서  $B_R$ 을 연결하는 선과 수직선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.)

# 제11조 메인롤후프머리보강제 (Roll Hoop Overhead (RHO) Members)

- ① RHO는 RRH의 B점에서 상하, 좌우 50 mm 이내의 지점에서 연결되어야 하며, 수평 방향으로 차량의 전면을 향하여 C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.
- ② RHO는 드라이버의 시트 바닥면에서부터 최소 1,000mm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C점은 드라이버의 착석 지점으로부터 전방으로 최소 200mm 이상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④ CR점과 CL점은 Lateral Cross Member(LC)로 연결되어져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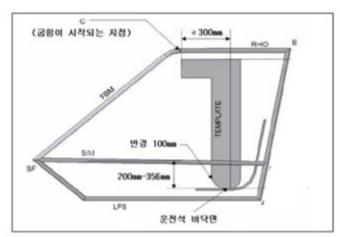


그림2. 메인롤후프보강제, Roll Hoop Overhead (RHO) Members

제12조 하단측면보호구조물 (Lower Frame Side (LFS) Members)

- ① LFS는 AL과 AR 지점에서 RRH의 수직, 수평 멤버(LC)와 연결되어야 한다.
- ② LFS는 앞쪽으로 연장되어 드라이버의 발뒤꿈치보다 앞쪽에서 FLC와  $AF_R$ ,  $AF_L$  지점에서 연결되어 야 한다.

제13조 전방롤후프보강제 (Front Bracing Members (FBM))

- ① FBM은 RHO, SIM, LFS와 연결된다. 상부 FBM(FBM<sub>up</sub>)은 중간에 용접되어 있지 않은 연속적인 파이프로 RHO와 C점에서 연결되며 SF점에서 SIM과 연결된다. 이때 연결지점이 SF의 뒤쪽이어도 무방하다.
- ② 상부 FBM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45도보다 작아야 한다. 하부 FBM(FBM<sub>down</sub>)은 SIM, LFS와 연결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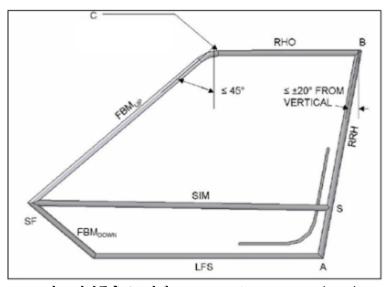


그림3. 전면롤후프보강제, Front Bracing Members (FBM)

③ 상부 FBM과 RHO가 C점에서 용접되어 연결될 경우에는 그림3과 같이 C점에서 보강 판(Gusset)을 좌, 우측에 용접하여야 한다. 보강 판은 강판으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 구조물이며 최소 두께는 1.5 mm 이상이다. 보강 판은 FBM과 RHO 연결부의 측면에 용접하며 보강판 각 변의 길이는 90 mm를 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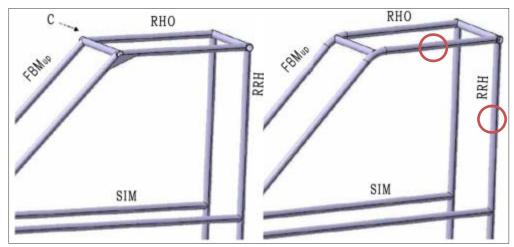


그림4. 보강판 설치의 예, 롤케이지 검사구멍 위치

제14조 메인롤후프보강제 (Roll Hoop Bracing Members)

- ① RRH의 보강재를 좌, 우측에 모두 부착하여야만 한다.
- ② 측면에서 차량을 보았을 때, 보강재는 삼각형(트러스) 구조물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보강재는 용접이나 볼트로 연장된 형태는 금지한다.

# 제15조 (최종판정)

- ① 규정의 최종판정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차량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직위원회의 재검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만족시켜야만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있다.
- ③ 균열이나 변형이 발생한 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.

# 제16조 (롤 케이지 및 보강재의 재질)

- ① 롤 케이지에 사용되는 파이프는 탄소강으로 외경은 25mm이상, 두께는 1.8mm 이상 원형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, 항복 강도 $(\sigma_y)$  = 285 Mpa 와 인장 강도 $(\sigma_u)$  = 360Mpa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과 다른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, 위의 파이프와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가짐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조직위원회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③ 합금강(Alloy Steel)을 사용할 경우라도 최소 두께는 1.6mm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모든 팀은 롤 케이지 규격표(별표1 참조)를 차량검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 규격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팀은 실격 처리되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모든 팀은 롤 케이지 및 보강재에 사용된 파이프의 재질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명세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.
- ⑥ 롤 케이지로 알루미늄 합금강을 사용할 경우 외경은 30mm이상, 두깨는 3mm이상의 원형 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, 항복 강도 $(\sigma_y)=240\text{Mpa}$ 와 인장 강도 $(\sigma_u)=260\text{Mpa}$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해야한다.
- ① 롤 케이지로 알루미늄 열처리강을 사용할 경우 모든 용접부위에 대한 열처리를 권장하며 용접부 모재의 모든 접선을 남김없이 용접해야 하고, 용접부위의 두께가 모재두께의 최소 2배 이상으로 흠결이 없도록 견고하게 용접해야 한다.
- ⑧ 모든 롤 케이지에는 그 두께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직경 5mm의 검사구멍을 그림4에 표시된 위치에 뚫

#### 고 잘 보이도록 표시해 놓아야 한다.

# 제17조 (머리충격 흡수패드)

- ①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사고 시 드라이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장착되어야 한다. 드라이버가 운전자세로 앉았을 때 헬멧의 뒷부분 중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의 중앙에 와야 한다.
- ②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스티로폼(Soft), 스펀지 등 탄력을 지닌 재료로 최소 240 cm의 면적과 40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하고 헬멧으로부터 25mm 이하의 거리를 유지하되 헬멧이 패드에 닿아 패드가 압축된 상태에 놓이면 안 된다.
- ③ 머리충격 흡수패드는 차량에 견고히 부착되어져야 한다.
- ④ 그림8의 B와같이 머리충격 흡수패드 일체형 시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패드를 부착하지 않는다.

# 제18조 (프레임 패딩)

롤 케이지의 주 구조물(RHO, FBM, SIM, LC 등 : RRH는 선택사항) 및 보강재의 어떠한 부위든 드라이 버의 헬멧과 닿을 수 있다면 최소 10mm 두께의 스티로폼(Soft), 스펀지 등 탄력을 지닌 재료로 덮어져야 한다.

# 제19조 (날카로운 부위 처리)

드라이버, 팀원, 경기진행요원, 심사위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날카로운 부분은 반드시 안전하게 마무리 처리를 해야만 한다.

# 제20조 (측면범퍼)

- ① 모든 차량은 측면범퍼를 설치해야 한다.
- ② 측면범퍼의 끝부분은 차량을 위에서 보았을 때, 타이어의 바깥쪽 끝과 타이어의 중심 사이에 있어야한다. (그림 5 참조)
- ③ 측면범퍼는 차량을 옆에서 보았을 때, 타이어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 200mm이상, 350mm 이하 이어야 한다. (그림 5의 A참조)
- ④ 측면범퍼 끝단의 높이는 차량을 옆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 중심에서 위아래로 75mm이내에 있어야한다. (그림 5의 B참조)
- ⑤ 최소 25mm, 1.2t 이상의 원형파이프, 또는 25x25mm, 1.4t 이상의 각형 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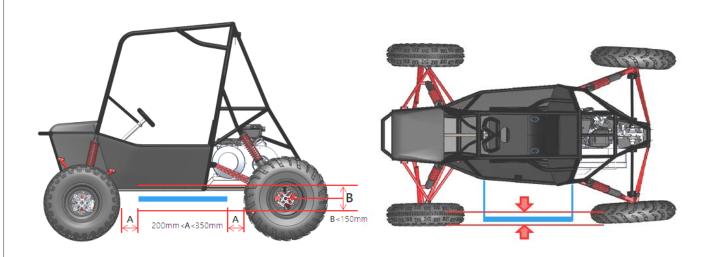


그림 5. 측면범퍼 설치 예시

# 제5장 안전 규정

제21조 (안전벨트)

- ① 4점식(양어깨를 감싸는 형식)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쉽게 장착,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 또한, 안전벨트의 재료는 나일론이거나 Dacron Polyester로 새것이거나 완벽한 상태이어야 한다. 허리벨트와 어깨벨트는 하나의 풀림장치를 공유하며, 이는 금속과 금속으로 연결되는 퀵 릴리스 타입의 걸쇠 혹은 승용차용 안전 걸쇠이어야 한다. 안전벨트의 이음부는 반드시 재봉틀에의한 박음질이어야 한다.
- ② 분리된 어깨 벨트만이 허용된다. "Y"형 어깨 벨트는 허용되지 않으며 "H"형의 어깨 벨트는 허용된다. 어깨벨트는 벨트 고리가 있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③ 어깨 벨트 및 허리 벨트의 폭은 40mm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벨트의 모든 구성품은 방화벽 안쪽의 드라이버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엔진룸의 공간에 존재할 경우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.
- ⑤ 벨트는 그림6와 같이 롤 케이지의 중요 부분에 고정되어져야 하며 롤 케이지의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탭(Tab)을 고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⑥ FIA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손상이 없는 온전한 상태여야 한다.



- ⑥ 어깨 벨트는 드라이버의 어깨높이 아래쪽으로 10°이내로 고정해야 한다. (그림7 참고)
- ⑦ 어깨 벨트의 고정부가 차량의 하단부에 있을 경우, 어깨높이에 있는 견고하게 고정된 둥근 파이프를 감아 나오는 형태로 장착되어야 하며, 둥근 파이프 위에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벨트의 위치 를 구속해야 한다.
- ⑧ 어깨 벨트의 장착점 사이거리는 180mm ~ 2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. (그림7 참고)
- ⑨ 드라이버의 시트가 몸을 완전하게 고정하기 힘들거나, 드라이버의 상체가 지면과 60° 이하로 기울었을 경우 다리사이 벨트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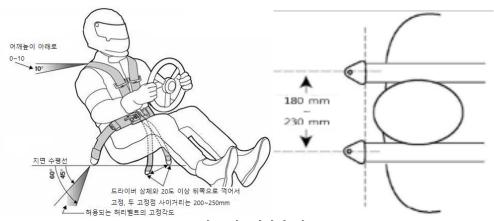


그림7. 벨트장착의 예

#### 제22조 (드라이버 시트)

드라이버의 시트는 아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.

- ①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드라이버의 허리와 어깨, 허벅지가 프레임구조물에 닿지 않아야 한다.
- ② 카트, 또는 레이싱 전용 버킷시트의 사용이 가능하며 알루미늄 등으로 맞춤 제작한 시트의 사용도 가능하다.
- ③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일반 사무용 의자 등을 개조해서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일반 자동차용 시트를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

그림8. 시트의 종류 (왼쪽부터 레이싱카트시트, 레이싱버킷시트, 직접제작)

# 제23조 (헬멧)

- ① 헬멧은 오프로드형만 사용 가능하다. (그림9 참조)
- ② 헬멧을 착용할 때는 항상 턱걸이 끈을 고정하여야 한다.
- ③ 반드시 별도의 고글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④ 헬멧의 크기는 드라이버에게 과다하게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.
- ⑤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헬멧만 사용 가능하며 파손이 확인된 헬멧은 사용할 수 없다.
- ⑥ 주행중 고글을 벗고 주행할 경우 즉시 경기에서 제외되며 발수코팅이나 필름부착, 김서림방지 등을 사용하여 드라이버 시야확보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.



그림9. 헬멧 및 시야확보 용품

#### 제24조 (드라이버 복장)

- ① 드라이버는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② 방화소재로 만들어진 복장 착용을 권장하며 단, 손목 끝까지 덮는 긴 팔 상의와 발목 끝까지 덮는 면소재의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.
- ③ 방화소재(가죽은 제외)로 만들어진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. 구멍이 있는 장갑은 금지된다.
- ④ 방화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의 착용을 권장한다.
- ⑤ 헬멧 밖으로 나오는 머리카락(100mm 이상)은 덮개로 씌우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차량 부품에 끼는 것과 화재로 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
# 제25조 (운전석 측면과 바닥면의 폐쇄)

- ① 주행 시 이물질로부터 드라이버의 보호를 위하여 드라이버 정면과 측면과, 그리고 바닥공간을 지면 과 격리시키는 판이 빈틈없이 설치되어야 하며, 격리판은 정면과 측면의 경우 두께 1mm, 바닥의 경우 두께 2mm 이상의 금속 재질 혹은 그에 상응하는 강도를 갖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바닥면 격리판의 경우 볼트/너트로 이루어진 고정방식을 권장하며 주행 중 지면의 요철과 접촉하여 도 찢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장착하여야 한다.

# 제26조 (드라이버의 팔, 다리의 보호)

- ① 차체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조향 및 서스펜션 관련 각종 링크 및 튜브 등은 드라이버의 안전을 위하여 오동작 및 사고 시에 드라이버의 발이 링크 및 튜브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드라이버의 발과 격리된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.
- ② 드라이버의 보호를 위해 팔 안전벨트를 설치한다.
- ③ 팔 안전벨트는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전복 시 드라이버의 손이 차량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한다.
- ④ 팔 안전벨트의 고정은 안전벨트의 잠금장치를 공유하여야 하며 한 번에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.
- ⑤ 그믈망, 도어 등으로 측면과 상단면이 견고히 폐쇄되어 있다면 팔 안전벨트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
#### 제27조 (드라이버 탈출)

- ① 드라이버는 5초 이내에 운전석에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탈출 소요시간은 드라이버가 완전한 복장을 갖추고 착석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향 휠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한다.
- ③ 탈출을 시작한 후 드라이버의 두 발이 모두 땅에 닿은 상태를 종료 시점으로 본다.
- ④ 팀의 드라이버가 2인인 경우, 심사위원의 지명에 의해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다.

# 제28조 (방화벽 - Firewall)

- ① 방화벽은 고온의 부품 (작동온도가 80도 이상인 엔진, 배기관, 엔진오일, 냉각수, 냉각팬의 모터 등모든 부품)과 연료시스템, 드라이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0.6mm 이상의 금속판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드라이버 뒤쪽의 주 방화벽은 RRH의 위쪽 LC와 아래쪽 LC사이의 전 부분을 차단하는 구조로 아래 예시(그림10)와 같은 구조여야 한다.
- ③ 연료시스템과 고온의 부품을 격리하는 연료방화벽은 충격에 의해 연료시스템이 파손되더라도 드라이 버와 뜨거운 부품이 연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하며 연료시스템이 뜨거운 부품에 의해 파손되거나 과도하게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전선이나 케이블, 안전벨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구멍을 뚫었다면 구멍의 남은 틈새를 최대한 불연성 재질로 매워야 하며, 남은 구멍의 크기가 5mm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엔진이 차량의 전면 또는 중간부분에 위치한 경우에도 방화벽은 고온의 부품과 드라이버, 연료시스템을 모두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.
- ⑥ 만약 엔진과 연료탱크가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면 두 부분 모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.
- ⑦ 만약 RRH 뒤쪽으로 고온의 액체나 부품, 연료통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 RRH의 주 방화 벽은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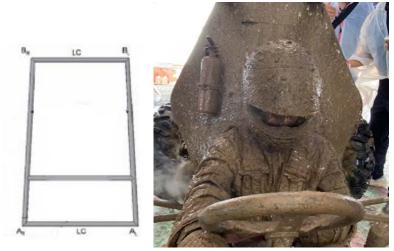


그림10. RR차량의 방화벽 설치 예시

#### 제29조 (소화기)

- ① 드라이버의 오른쪽 어깨높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소화기에는 각 팀의 이름과 출전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③ 소화기는 0.3kg이상 ABC소화기로 검차 시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.
- ④ 주행중 소화기가 떨어질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.
- ⑤ 소화기는 견고하게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.

#### 제30조 (마스터 스위치)

- ① 마스터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스위치여야 한다.
- ② 각 차량은 두개의 마스터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. 각 마스터 스위치는 배터리, 연료펌프, 점화플러그, ECU 등 모든 전기장치에 전기를 차단하여야 하며 엔진을 반드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.
- ③ 마스터 스위치 중 하나는 내부의 드라이버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. 다른 하나는 차량 의 외부에 드라이버의 오른쪽, 메인롤 후프 주변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야 한다.

- ④ 마스터 스위치는 머리 부분이 적색이나 오렌지색 등으로 표시되어 쉽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.
- ⑤ 외부 마스터 스위치는 그림11의 예시의 형태로 된 제품만 허용한다.
- ⑥ 마스터 스위치를 작동하여도 혼, 제동등은 계속 작동하여야 한다.



그림11. 외부 마스터스위치

# 제31조 (견인 고리)

- ① 모든 차량은 사고 시 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12과 같은 견인 고리를 설치해야 한다.
- ② 견인 고리는 그림12과 같이 제작되어야 하며, 50mm이상, 80mm이하로 돌출되어야 한다.
- ③ 견인 고리는 외경 25mm, 두께 0.8mm 이상의 원형 파이프로 제작되어야 한다.
- ④ 견인 고리 끝단의 높이는 드라이버가 탑승한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350mm이상 500mm이하야 한다.
- ⑤ 견인고리는 차량의 전/후방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단, 전/후방의 수평부재(LC)가 견인고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장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판단은 경기 운영위원회가 한다.





그림12. 견인 고리 형태 및 부착방법

# 제32조 (혼, 사이드미러)

- ① 60dB(C특성) 이상의 전자식 혼을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최소 좌우측 2개 이상의 사이드미러를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.

# 제33조 (설계 목표)

- ① 차체는 드라이버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드라이버가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② 차량이 주행 중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튼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.
- ③ 불규칙한 노면과 날씨변동으로 인한 주행상황 변화에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# 제6장 엔진 및 배기장치

#### 제34조 (엔진)

- ① 4행정 가솔린 엔진으로 배기량은 125 cc 이하이어야 한다.
- ② 규정된 배기량 범위 내에서는 엔진의 어떤 부품도 교환이 가능하다.
- ③ 압축비, 기화기, ECU, 연료압력조절기, 흡기포트, 배기 포트가 순정상태가 아닌 경우 개조부분으로 분류한다.
- ④ 흡기필터, 흡기관, 배기관, 점화플러그, 기어비 등의 일반개조는 개조부분으로 분류하지 않는다.
- ⑤ 국산엔진이 아닌 경우 개조부분으로 분류하며 제조사의 국적은 분류하지 않는다.

# 제35조 (동력전달 장치)

- ① 2륜구동과 4륜, FF, FR, RR 등 어떠한 형식도 허용된다.
- ② 변속기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구동축의 개조도 가능하다.

제36조 (동력전달장치 보호판 및 보호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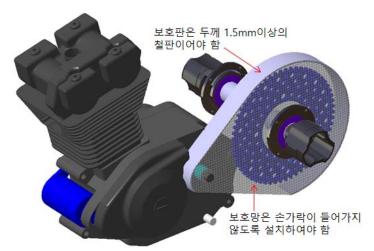


그림13. 보호판 및 보호망

벨트, 체인, 스프로킷,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차량은 운행 중 그 부품들이 파손되어 그 파편들이 튈 때 드라이버나 주위의 사람, 연료라인, 브레이크 라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판을 장착하여야 한다.

- ① 체인 구동방식 보호판
  - 가. 보호판은 적어도 1.5mm 이상 두께의 철판을 반드시 사용(다른 어떤 재료의 사용도 불허) 하여야 하고 체인의 폭보다 3배 이상 넓은 폭을 가져야 한다. 체인이 회전하는 바깥쪽 부분에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.
  - 나. 보호판은 구멍이 난 소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또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판 좌우 에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다. 만약에 프로펠러나 냉각용 팬이 사용된다면 팬과 신체의 접촉이 불가능 하도록 배치하고 보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벨트 구동방식 보호판

보호판은 최소 1.5mm 이상 두께로 제작하여야 하고 벨트의 폭보다 2배 이상 넓은 폭을 가져야 한다.

- ③ 보호판 고정 방법 모든 보호판은 지름 6mm 이상의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. 보호판은 체인이나 벨트와 어떤 조 건에서든지 항상 나란히 있도록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.
- ④ 손가락 보호망 모든 동력전달 계통에도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움직이는 부품 움직이는 부품, 즉 구동축, 벨트, 체인, 스프로킷 등으로부터 드라이버를 보호하여야 한다.

#### 제37조 (배기장치)

- ① 배기계통은 어떤 형태이든 허용되며 필히 소음기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② 배기장치는 차량에 견고히 부착되어져 있어야 한다.
- ③ 배기관은 드라이버에게 배출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향을 배치시켜야 한다.
- ④ 배기관의 길이는 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.
- ⑤ 배기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00mm이하로 한다.
- ⑥ 배기관의 모든 부분(머플러 제외)은 작업자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단열재로 보호되어야 한다.



그림14. 배기단열 테이프

### 제38조 (시동 및 충전장치)

- ① 시동장치는 운전자에 의한 자력 시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충전장치의 부착 유무는 자유이며, 어떠한 형식의 충전장치와 축전지도 가능하다

# 제39조 (냉각 및 윤활장치)

- ① 냉각장치의 부착여부는 자유이며,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.
- ② 윤활장치는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윤활유의 선택도 자유이다.

# 제7장 연료장치

# 제40조 (연료통)

- ① 연료통의 위치는 차량의 최 하단에 고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소4L, 최대 8L를 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연료통는 운전석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엔진 또는 배기관으로 격리된 구조이어야 한다. 또

한, 차량 전복사고 연료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의 연료탱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배기관과 연료라인과는 100mm 이상 격리시키고 이하일 경우 연료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. 연료통 등 모든 연료 시스템은 전복사고 시에도 안전하도록 차체공간 (주 구조물의 외부, 메인롤후프 최상단과 4개 타이어의 바깥 모서리가 이루는 공간) 안에 있어야 한다. (그림15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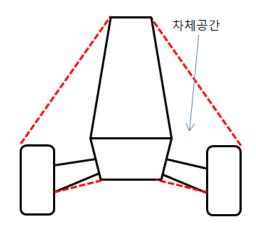


그림15. 차체공간과 연료 주입구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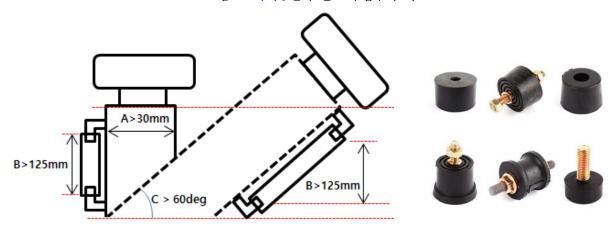


그림16. 연료주입구와 연료량표시기의 조건과 방진고무볼트

- ④ 급유구의 끝부분은 연료주입시 연료가 넘치더라도 고온의 부품으로 연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롤케이지 외부로 돌출되어야 한다.
- ⑤ 연료통과 급유구를 호스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 내연료성을 가진 호스를 사용해야하며 360°를 감싸는 클램프로 채결해야 한다.
- ⑥ 연료라인을 연결하는 클램프는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조이는 클램프여야 한다. 단, 웜기어 방식의 호스클램프는 연료라인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료라인 외부에 보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 겉에 웜기어 방식의 호스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⑦ 연료통이 엔진룸의 상단에 위치할 경우 연료 드립팬은 엔진본체 및 배기파이프 열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금속으로 된 열차단격벽의 역할도 겸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⑧ 연료통은 반드시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. (그림16 참고)
- ⑨ 연료 주입구 또는 연료통의 상단에는 내연료성을 가진 연료량 확인용 투명호스를 장착하여야 하며, 그림16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125m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.
- ⑩ 연료주입 시 연료의 취급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주입구 주변에 안전한 주유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부품도 있어서는 안 된다.

#### 제41조 (연료 드립 팬)

- ① 연료주입 시 연료를 흘리거나 연료통에서 연료가 샐 경우 드라이버나 배기구, 엔진, 점화장치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연료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드립 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② 연료 드립 팬은 연료통 밑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드립 팬에는 문제 시 연료가 차서 넘치지 않도록 바깥 바닥으로 배출될 수 있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야 하며 규정검사 시 물을 부어 배출 여부를 검사한다.
- ④ 연료탱크와 연료주입구가 차량의 바닥에 고정되어 연료 누유 시에도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드립 팬의 설치는 요구되지 않는다.

#### 제42조 (사용연료 및 흡기계통)

- ① 연료는 가솔린을 사용한다.
- ② 엔진 에어클리너(흡기필터)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.
- ③ 대회에 사용되는 연료는 참가팀이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.

# 제8장 경기 차량의 식별

제43조 (차량 깃발 및 깃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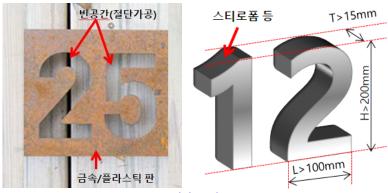
- ① 참가차량은 차량 깃발(가로 300mm 세로200mm 이상)을 부착하며 100m 전후방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참가팀이 직접 부착 후 참가하여야 한다.
- ② 차량 깃대는 휘어지지 않는 재질로 길이 1,000mm 이상, 지면에서 2,000mm 이상, 2,500 mm이하로 차량의 후방에 볼트 고정시키고 깃대 상단으로부터 차량 출전번호(엔트리)와 대회기(조직위원회제공)를 의무 부착하여야 하며, 하단에는 학교 깃발을 부착할 수 있다.
- ③ 경기 중 깃대가 45°이상 휘어질 경우 경기 참여가 제한된다.
- ④ 최고 깃봉 상단으로부터 차량 출전번호(엔트리)와 대회기(조직위원회 제공)를 의무 부착하여야 하며, 하단에는 학교 깃발을 부착할 수 있다.
- ⑤ 깃대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볼트로 고정해야 하며 검차 시 반드시 탈거하여 지참하여야 한다



그림+6.17 깃발 및 깃봉 조건

#### 제44조 (차량 출전번호)

- ① 모든 참가차량은 진흙이 묻어도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3차원의 양각, 또는 음각으로 제작된 출전번호(엔트리)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.(그림18)
  - 가. 물에 젖어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.
  - 나. 그림18의 지정된 위치1,2에 총 3개 부착하여 전/후/좌/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다. 고딕계열의 글씨체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라. 각 숫자의 크기는 높이200mm, 가로 100mm이상이어야 한다.(그림18 참조)
  - 마. 양각 엔트리의 경우 보색을 사용하여 바탕면의 색상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제작되어 야 한다.
  - 바. 양각 엔트리의 경우 두께 15mm이상의 경질발포스티로폼 등의 플라스틱으로 제작한다.
  - 사. 음각 엔트리의 경우 금속 또는 플라스틱 판 등을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다.
- ② 차량 출전번호는 참가팀이 직접 제작하여 미리 부착해야 한다.
- ③ 떨어져 차량의 식별이 불가할 경우 경기에서 제외된다.
- ④ 측면에 부착하는 차량 출전번호는 뒤쪽으로 기울어져 후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측면에 부착한 출전번호가 후면에서 식별이 불가할 경우 뒤쪽에 1개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.
- ⑥ 출전번호와는 별도로 주최 측에서 지급하는 스티커를 차량 옆면에 부착해야 한다.



제작 조건





부착 위치 및 예시 **그림18. 차량 출전번호** 

#### 제45조 (차량검사 스티커 공간)

차량검사를 통과 하였을 때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 차량 전면에 가로 $100 \, \mathrm{mm} \, \mathrm{X}$ 세로 $100 \, \mathrm{mm} \, \mathrm{X}$ 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.

# 제46조 (차량식별용 점멸등)

① 차량이 먼지 속에서도 식별될 수 있도록 면적 30cm 이상의 점멸등을 설치해야 하며 10m 당 1개 이상의 LED를 포함하여야 한다. (그림 19)

- ② 점멸등은 차량을 전/후방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③ 점멸등은 주행 시 항상 작동해야 한다.
- ④ 점멸등의 색상은 적색으로 하며 0.5 hz에서 1 hz로 점멸해야 한다.
- ⑤ 전/후방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후방 점멸등은 제동등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단, 제동상태일 경우 점멸이 아닌 상시 점등되어 야 한다.
- ⑦ 전/후방 점멸등의 높이는 최소 차축의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700mm이하여야 한다.
- ⑧ 점멸등은 방수/방진 성능이 충분해야 하며 주행 중 작동이 불가할 경우 경기에서 즉시 제외된다.







그림19. 점멸등의 위치와 모양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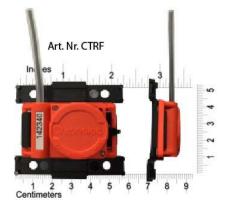
# 제9장 트랜스폰더(Transponder)

제47조 (트랜스폰더)

- ① 차량 주행의 랩타임과 순위의 판단을 위해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경기계측에 사용한다.
- ② 트랜스폰더는 경기조직위원회가 준비하여 운영한다.

#### 제48조 (트랜스폰더 부착 방법)

- ① 트랜스폰더와 지면 사이에 무선 송수신을 방해하는 어떤 부품도 있어서는 안 된다.
- ② 방향: 트랜스폰더가 세워지도록 홀더를 고정한다.
- ③ 위치 : 차량의 왼쪽 측면에 지면과 가까운 위치에 장착한다.
- ④ 트랜스폰더는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물로부터 트랜스폰더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트랜스폰더의 장착불량, 미장착, 주행 중 분실, 파손 등 모든 이유로 계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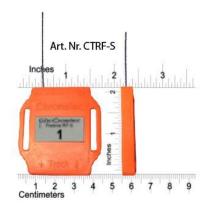


그림20. 트랜스폰더 예시

# 제10장 기타 규정

#### 제49조 (전기장치)

- ① 안전한 주행 정보를 위하여 속도계 및 기타 장치의 설치는 자유이며 어떠한 형식도 허용된다.
- ② 운전 중의 안전과 주행 정보를 위해 각종 계기장치의 사용은 허용된다.

#### 제50조 (과년도 출전 차량의 참가)

지난 대회에 참가한 동일한 차량은 참가할 수 없으며, 일부 내용만 조정하여 참가하는 차량의 경우 설계 및 제작 상에 변화를 주어야 하고, 이 경우 차량검사 실시 시에 조직위원회에 알려야한다. 조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, 심사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.

# 제51조 (사진 및 촬영장치 장착)

각 팀은 필요시 참가차량에 촬영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드라이버 시야를 방해하거나 드라이버 신체 및 움직이는 공간 내에 장착은 허용되지 않는다. 또한 고정은 반드시 브래킷을 이용하여야 한다.

## 제52조 (공력장치의 적용)

차량의 공기역학을 활용한 별도의 장치(디퓨져, 스포일러, 카나드 등)는 아래 요구조건에 따라 장착이 가능하다.

- ① 드라이버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.
- ②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.
- ③ 출전번호의 확인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.
- ④ 주행 중 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볼트,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 정되어야 한다. (본딩, 테이핑 등의 임시 고정방식은 허용하지 않음)
- ⑤ 공력장치는 차량을 위에서 보았을 때, 공력장치를 제외한 차량의 길이와 폭이(전장/전폭) 이루는 차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.

#### 제53조 (전기 및 하이브리드)

- ① 전기모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터사양서, 배터리 사양서, 시스템 사양서,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별도의 참가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구동에 사용되는 전기모터는 최대전압 60v이하, 최대출력20kw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의 규격과 형식,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.
- ③ 모터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 모터의 최대출력 합이 20kw를 넘을 수 없다.
- ④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경우 경기 전 공지되는 사전검차 및 공식 테스트주행에 의무 참석해야 한다.
- 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경우 별도의 평가방식 및 수상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식 테스트주행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.

# 부칙

- 1.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.

2007.12. 8 제정	2008. 1. 8 개정	2009. 2.11 개정	2010. 2.19 개정
2011. 2.25 개정	2012. 3. 8 개정	2013. 3. 8 개정	2014. 3.13 개정
2015. 3.12 개정	2016. 1.14 개정	2017. 1.19 개정	2017.12.21 개정
2018.12.20. 개정	2020. 1.15 개정	2020.12.17 개정	

[별표 1]

#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롤 케이지 규격표



본 규격표의 목적은 롤 케이지의 재질과 크기가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, 과년도에 출전한 차량인지 여부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이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 대회의 목적인 공학적 설계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.

규격표를 참가 차량별로 각각 작성하여 차량검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아니한 팀은 실격 처리되어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AND SET THE BE ENTERED TO SET TO BE TO ME THE				
학교명		* 출전번호		
팀명		차량명		
롤 케이지 제작 년도				
재질	(재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참: 거래명세서 등)			
외경		두께		
항복강도		인장강도		
* 본 규정과 다른 파이프를 사용한 경우 계산식에 따른 결과를 별첨하시오.				
용접부위 및 체결부위 최종 점검일자	* 유의사항 : 용접부위 및 체결부위	점검은 안전과 관계되!	므로 철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합니다.	
상기 팀은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에 본 규격표를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.				

년 월 일

지도교수 : (서명)

팀 장: (서명)

#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조직위원회 귀충